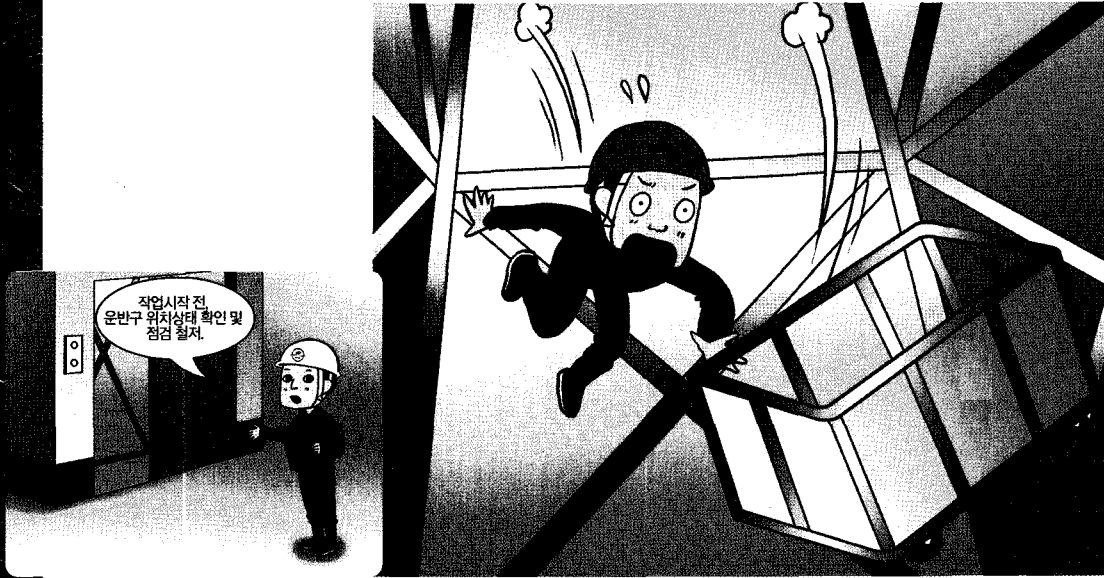


리프트 이용 원단 운반 작업시 추락

*업종 : 섬유제품제조업 | 생산품 : 나염 인쇄 | 기인물 : 리프트 | 재해유형 : 추락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생산동 2층 원단창고에서 원단에 프린팅을 하기위해 1층으로 원단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 중 리프트 운반구가 3층에 위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단이 적재된 운반대차를 밀고 들어가 대차와 함께 약7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인쇄용 원단을 1층 인쇄 작업장으로 내리는 작업을 수행 중 리프트 운반구가 3층에 위치하여 2층에 운반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층 출입문을 열고 운반구 정위치를 확인 하지 않은 상태로 대차를 밀고 들어가 약 7미터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리프트 운반구의 정위치 여부를 미확인
- (2) 출입문 연동장치 및 인터록 기능 제거
- (3) 안전의식 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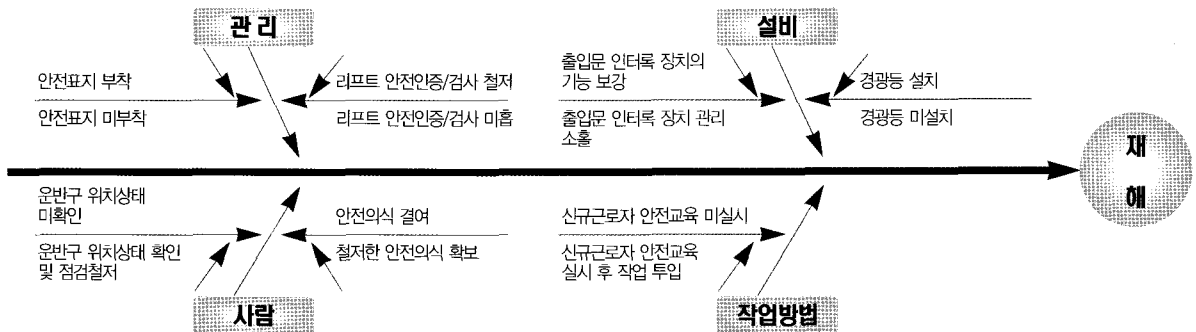
나. 예방대책

- (1) 작업시작전 운반구 위치상태 확인 및 점검철저
- (2) 출입문 인터록 장치의 기능제거 금지
- (3) 철저한 안전의식 확보

4. 범위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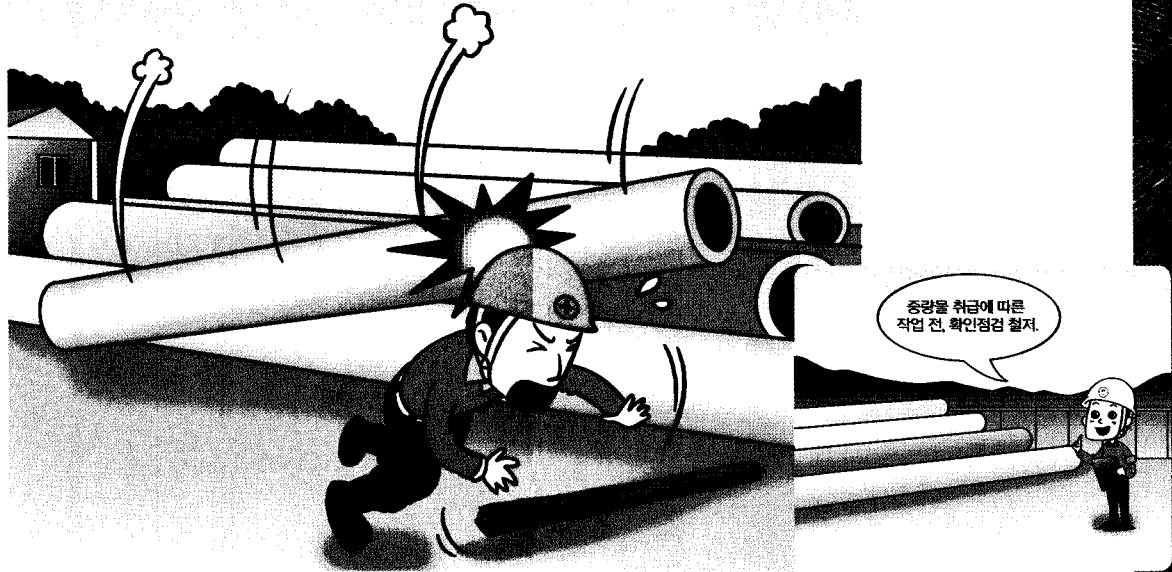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주 파일 정리중 협착

*업종 : 비금속광물제조업 | 생산품 : 전주 | 기인물 : 전주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임시로 야적되어 있는 전주를 피해자가 전주 야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 사이에 고여 있는 받침목을 지렛대로 제거하는 순간 상단에 적재되어 있던 전주가 굴러 떨어져 피해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피해자는 임시 야적장에 적재된 전주를 용이하게 작업이 되도록 정리하기 위해 전주에 받쳐놓은 3개의 받침목 중 1개를 제거하는 순간, 받침목 제거로 인한 무게중심이 이탈되면서 3단 높이 (약 1.2m)에서 전주가 굴러내려 피해자를 강타하여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작업전 위험요인 확인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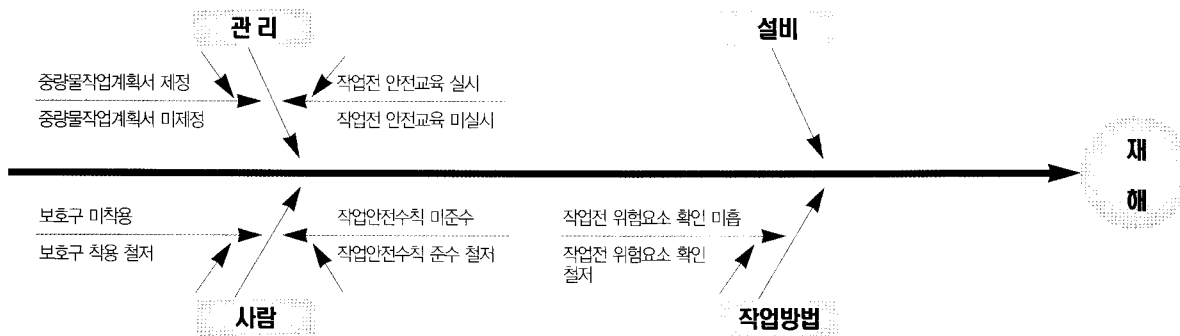
- (2) 안전보호구 미착용
- (3)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 조치미흡

나. 예방대책

- (1) 중량물취급에 따른 작업전 확인점검 철저
- (2) 보호구 착용 후 작업
- (3) 중량물작업계획서를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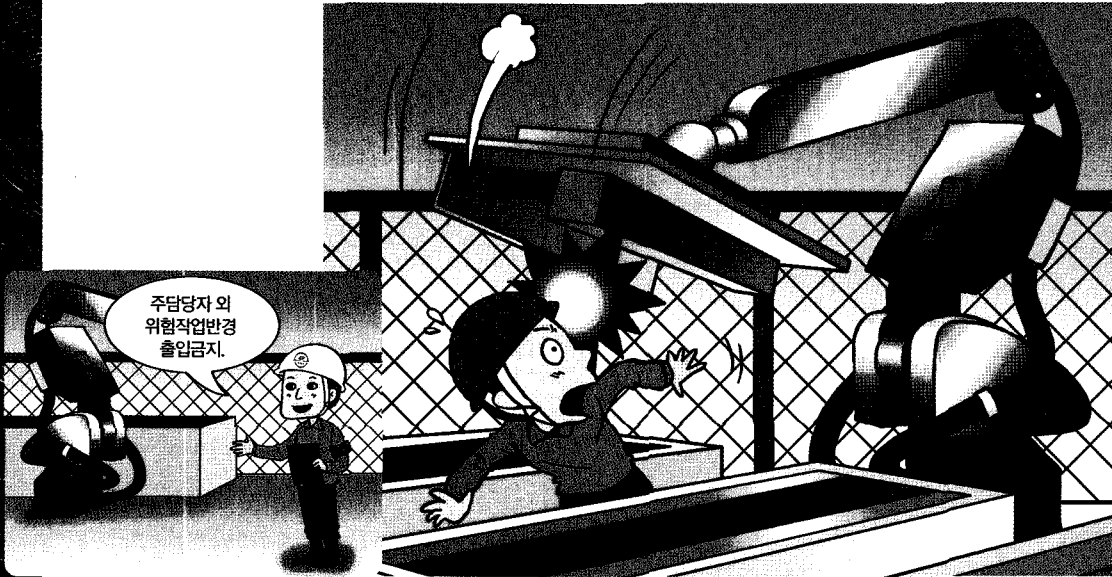
4. 범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품적재 산업용로봇 작업장내 협착

*업종 : 음료제조업 | 생상품 : 음료 | 기인물 : 산업용로봇 | 재해유형 : 협착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피재자가 운전자 부재중인 상태에서 Door를 열고 작동중인 안전을 안으로 들어가 작업하려는 순간 로봇에 협착되어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테트라 팩 포장기에서 나온 제품이 재포장되어 Conveyer를 타고 나온 제품이 up/down Lifter에 정렬되어야 하나 수직하단에 설치된 Roll Conveyer 정렬센서 문제로 정렬되지 않자 업무를 수행하는 피재자가 Door를 열고 작동중인 올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다 로봇이 동작하여 로봇 그립헤드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피재자가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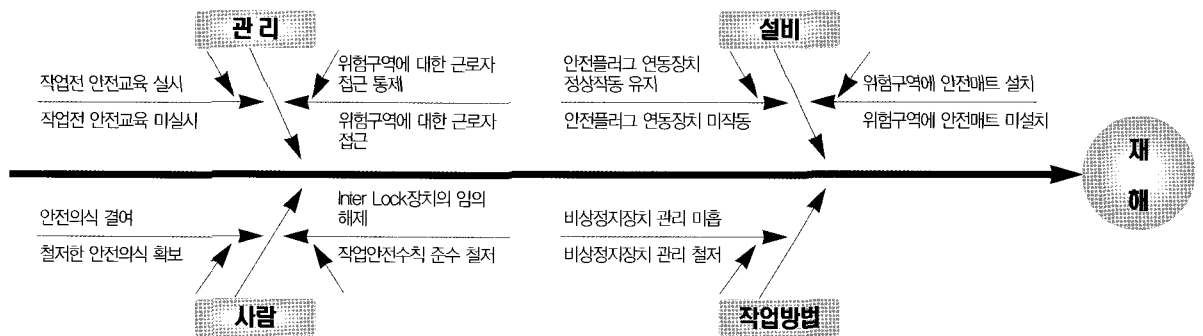
- (1) Inter Lock장치의 기능을 임의해제 후 작업 실시
- (2)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 (3) 주담당자 외 작업자가 위험구역 접근

나. 예방대책

- (1)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 (2) 작업안전수칙 준수 철저
- (3) 로봇작업 영역 내 출입 금지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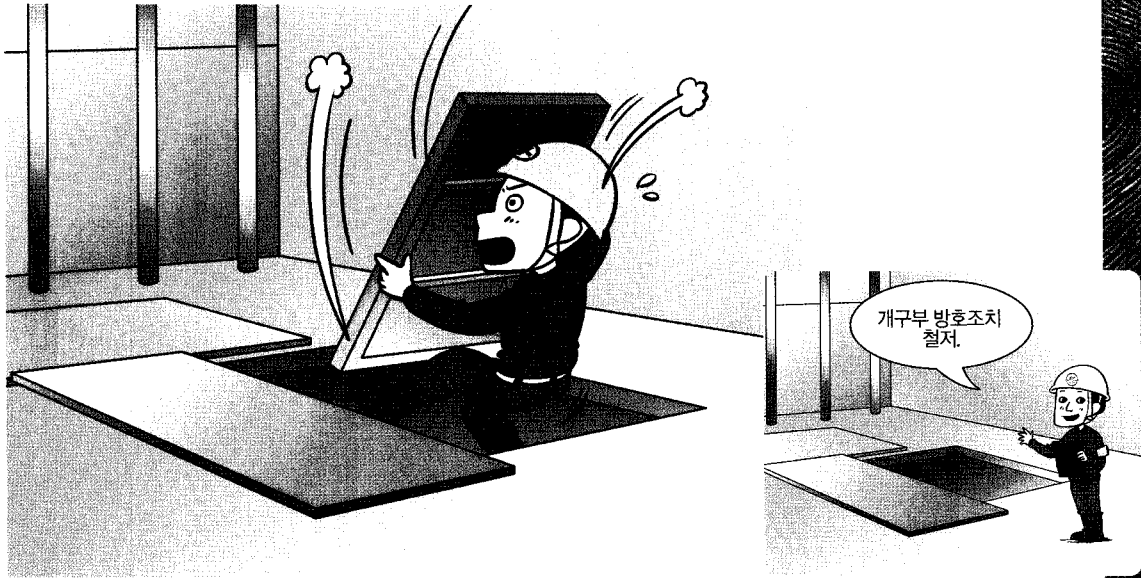
4. 범위반사항

-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재정리중 개구부로 추락

*업종 : 건설업 | 생산품 : 토목공사 기인물 : 개구부 | 재해유형 : 추락 |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



1. 재해발생개요

OO건설 스키장 현장에서 피해자가 스키하우스 2층에서 해체된 거푸집 정리작업 중 설비배관용 개구부에서 추락하여(5m) 사망한 재해

2. 재해발생과정

피해자와 동료작업자 10명은 스키하우스 주방 1층의 탈형된 후 도처에 흩어져 있는 거푸집 정리작업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 설비용 개구부(600×800mm)에 덮혀 있는 거푸집(유로폼: 600×1,200mm, 15kg)을 정리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개구부 안쪽으로 추락하여(5m) 사망

3.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가. 재해 발생원인

- (1) 작업전 안전점검 미흡

- (2) 개구부 방호조치 미흡

- (3) 보호구 미착용

나. 예방대책

- (1) 작업전 위험요인 확인 철저

- (2) 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3) 보호구 착용 철저

4. 범위반사항

가.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